
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선원에 대하여도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적용하도록 함(안 제5조제1항).
- ‘장제(葬祭)’라는 용어를 다른 법률에 맞추어 ‘장례(葬禮)’로 정비하고, 선원재해보상에 따른 장례비 지급대상을 ‘장례를 지낸 유족’으로 변경함(안 제100조 등).
- 선원직업안정 등을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‘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’를 추가함(안 제108조제2호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안 제108조제2호의2는 선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에 관한 권한과 부여하고 있는데, 현행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개정안은 물가 수준을 고려한 ‘실질소득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, 이는 이 법률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법률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가변적이므로,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추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.

-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 제108조제2호의2를 “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”로 수정하는 내용의 의견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제시함.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건
제108조(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·2. (생략) <u><신설></u> 3.·4. (생략) ② (생략)	제108조(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) ① --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. 1.·2. (현행과 같음) <u>2의2.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</u> 3.·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	제108조(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) ① --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. 1.·2. (개정안과 같음) <u>2의2.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</u> 3.·4. (개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

-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(전문위원 김성완)